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Value-Added Taxing on Designing and Construction Management

황용현 / 본 협회 업무지도공인회계사
by Hwang Yong-Hyun

I. 자유직업인 부가가치세 과세의 개요 및 배경

최근의 경제적 국난은 일반 국민 특히, 사업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업자가 받는 고통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세정분야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정부는 최근 IMF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흑자재정의 기조를 이루기 위한 세제개혁 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개혁 방향의 핵심은 간접세(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납세자가 다른 국세)의 확대 및 직접세의 과세기반 확충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수입중 가장 큰 부분이 부가가치세이며 간접세로서의 부가가치세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세율의 인상 또는 면세범위의 축소이다. 당초 IMF의 요구는 태국과 멕시코의 경우처럼 세율을 인상(10%→11%)하는 것이었으나 세율인상이 미치는 경제적·행정적·심리적 영향이 커서 정부에서는 세율인상의 정책을 철회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 같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용역, 부가가치 생산요소 관련 재화·용역, 근로유사 인적용역 및 기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화·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중 부가가치세를 확충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주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문직종 등의 인적용역은 다음과 같다.

98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예정 전문직종

- 건축사 및 기술사·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 학원·기타의 인적용역

이처럼 그동안 면세된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세무처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라 조세저항이 발생돼 일부가 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결국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II. 면세폐지가 건축사업에 미치는 영향

면세폐지가 건축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관련 행정의 복잡성 증대, 수익성 저하 및 이중 기격의 발생 등으로 볼 수 있다.

1. 세무관련 행정의 복잡성 증대

(1) 세무조사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조사가 시행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무조사 중에는 부가세 갱정조사가 있는 바, 이는 도표와 같은 업종별 부가율의 관리에 따라 부가율이 저조한 업체에 대하여 조사가 시행된다.

$$\text{부가율} = \frac{\text{매출액}-\text{매입액}}{\text{매출액}} \times 100$$

한편 정기 법인세조사의 경우에도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누락이 지적되더라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만 추징되었으나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세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2) 세무신고

면세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설계·감리수입)을 매년 1회(익년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보고시에 신고하였으며 법인의 경우 별도의 수입금액 신고 절차가 없이 매년 3월 법인세신고만 하면 되었으나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법인의 구별없이 1년에 4회의 수입금액 신고(부가가치세 신고)를 도표와같이 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가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용 기 간	신고(납부)기한
1기예정신고(납부)	1월~3월	4월 25일
1기확정신고(납부)	4월~6월	7월 25일
2기예정신고(납부)	7월~9월	10월 25일
2기확정신고(납부)	10월~12월	1월 25일

(3) 자료 전산처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제출되면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되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와의 제출내역이 상호검증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의 경우 그 제출의무가 1년에 1회이고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므로 그동안 상호검증이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그 제출이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상호검증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요구가 빈번해 질 것이며 이로 인한 세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4) 내부관리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따라 건축사의 내부관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다 철저해야 할 것이다.

가. 자금계획

건축사의 자금계획에 부가가치세 납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회사의 자금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보다 많게되므로 회사의 자금지출시 빈번하게 돌아오는 부가

가치세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제 및 계획이 필요하다.

나. 계약서 관리

그동안에는 설계 및 감리계약서상에 대금 수취조건이 명시되지 않거나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대금수취일자 및 계산서 발행일자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다하더라도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총액과 발행된 계산서상의 금액의 합계액이 일치되고 연도별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틀리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없었지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경우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일자와 계약서상의 대금수취조건이 일치하도록 변경계약서의 작성을 습성화 해야한다.
- 설계 및 감리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선 대금이 수취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청구)가 전부 발행되어야 한다.
- 가급적이면 실제 대금수취와 관계없이 계약서상의 조건이 성취되면 세금계산서(청구)는 발행하도록 한다.
- 6개월미만의 설계·감리용역은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위배할 경우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계약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변경계약서 작성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 세금계산서 관리

매출세금계산서는 누락됨이 없도록 사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매입부가세는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철저히 해야한다.

2. 수익성 저하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부가가치 세법상의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담을 경감하게 하기 위한 것이아니라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과세와 면세의 세부담 비교〉

구 分	면세(현재)	과세(변경)
매 입	1,000	1,000
매 입 세 액	100	100
지 급 금 액	1,100	1,100
매 입 원 가	1,100	1,000
부 가 가 치	500	500
매 출	1,600	1,500
매 출 세 액	-	150
소비자의 구입금액	1,600	1,650
납 부 세 액	-	50
사업자의 순현금	500	500
정부의 세수 (부가가치세)	-	50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게 하고 나아가 단일세율로 운용되는 부가가치세에서의 소득에 대한 간접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분석하면 도표와 같다.

상기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과세의 경우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순현금(판매금액-지급금액-납부세액)은 동일하며 정부의 세수는 증가되고 동 금액만큼 소비자의 지출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과세로 인해 증가되는 부가가치세만큼의 추가지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증가된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세금의 전이현상을 유발하게 되므로 결국 과세로 변경되면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증가된 부가가치세만큼 수익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위주의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경우와 면세사업자가 건축주인 경우에는 즉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일반사업자가 건축주인 경우에도 세금의 전이현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결

국 전체적인 건축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다.

3. 이중가격의 발생

현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유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1년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자세한 내용은 후술)로 구별하고 있다. 이중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또한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율의 10%(간이과세자) 및 2%(과세특례자)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 바 동일한 조건의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건축사의 과세유형에 따라 건축사의 수익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대수가 달리 책정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이중 가격의 형성은 그렇지 않아도 가격경쟁이 치열한 건축사업계에 추가적인 문제점을 줄 수 있다.

사업자의 유형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1.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특례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직전연도 1억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1억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미만인 개인사업자
2.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대가
3. 세율	10%·0%	업종별 부가율×10%·0%	2%·0%
4. 거래정수	의무있음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5.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능하고 영수증 교부만 가능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능하고 영수증 교부만 가능
6.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당해업종별 부가가치율×10%	과세표준(공급대가)×세율(2%·3.5%)
7. 예정신고납부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자진 신고납부 단, 1억5천만원미만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 50%예정고지 단, 납부세액 24만원미만 예정고지 생략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 50% 예정고지 단, 납부세액 24만원미만 예정고지 생략
8. 매입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의 일정률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20%초과 : 20% 업종별 부가가치율 20%이하 : 10%	매입세액의 10%를 납부 세액에서 공제
9. 표준신고율	적용대상이 아님	적용대상이 아님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과세표준신고 시 경정배제
10. 미등록기산세	개인: 공급가액의 1% 법인: 공급가액의 2%	개인: 공급대가의 1%	개인: 공급대가의 0.5%
11. 소액징수부	적용대상이 아님	적용대상이 아님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12. 기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 상기에서 세율이 0%인 경우는 외국에 설계용역을 제공할 경우임.

III. 건축사사무소의 부가가치세 실무요령

1. 부가가치세의 개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라 함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부가가치를 낼게하는 생산요소(토지·노동·자본 및 기업경영)의 대가인 임대료·급료·이자와 이윤 등을 합계한 금액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 기업의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하면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게 되는 간접세이다.

2. 사업자의 유형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별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과세유형별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개인 또는 법인에 관계없이 도표와 같다.

구 분	과 세 기 간
일반적인 경우	• 제1기 :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폐업자의 최종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4. 공급시기

공급시기라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시기를 말하며 설계·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용역이 완료된 때이다. 그러나 계약서상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의 형식으로 대금을 수취하는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 기준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을 받기로 약정한 날에 실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5. 영세율

부가가치세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

정책 등의 이유에 의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세율 제도이다. 설계·감리의 경우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면세와는 달리 매입부가세는 환급이 된다.

6.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객체의 금액으로서 설계·감리용역의 과세표준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만약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자에게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시가로서 과세된다는 것이다.

7. 세율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영세율의 경우를 제외하고 10%이다.

8. 납부세액의 계산

납부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함께 정부에 납부할 세액을 말하며 이때 매입세액 등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계산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매 출 세 액 … 과세표준 × 세율

(-) 매 입 세 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금전등록기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확인세액

대손세액

재고매입세액

납 부 세 액

(+) 가 산 세

차 · 가감납부(환급)할 세액

매출세액은 설계·감리용역가액에 10%를 곱하여 산출이 되며 가산세는 뒷장에서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주로 매입세액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재화나 용역을 구입 또는 사용하고 받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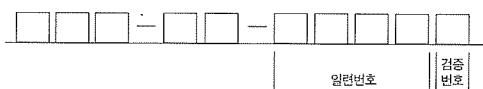
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건축사사무소가 다음의 지출을 하고 받는 세

구 분	내 역
• 외주기공비	다른 건축사사무소 및 기술사사무소에 외주를 주고 지출한 비용
• 비품구입비	비품구입, 인테리어설치 및 CAD등의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용
• 지급임차료	월세로 납부하는 임차료 및 관리비
• 소 모 품 비	설계·감리에 필요한 종이 및 필기구 구입비용
• 복리후생비	직원회식 및 종업원 복리후생 비용
• 기타	업무와 관련된 비용

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된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중 세금계산서로 수취된 부분의 매입세액만 공제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되어 지출되었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과세특례자나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며 또한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공제가 없다. 참고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유형을 알 수 있는 바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상기 일련번호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0001~5999이며 일반 과세자는 6000~99990이므로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일련번호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나.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로 합계하여 작성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② 세금계산서의 미수취·부실기재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에 필 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지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 함은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배기량 800cc이하의 승용차를 제외한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특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티코이외의 출퇴근용 및 업무용승용차 모두가 해당된다. 이러한 승용차의 취득시 또는 차량유지비, 수선비 및 주차료등의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⑤ 접대비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등록전 매입세액

건축사사무소가 개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한다.

(2) 이면확인 매입세액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금전등록기계서를 발행할 경우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거래상대방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3) 대손세액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주의 파산·강제집행등의 사유로 설계·감리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왕에 발생된 매출채권(부가세포함)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자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사망, 실종신고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일반적으로 외상채권은 3년임)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4) 재고매입세액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었던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비품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종 류	적 용 범 위	적용금액	가 산 세		비 고
			개인	법 인	
① 사업과 미등록가산세	• 사업지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1/100	2/100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1% • 과세특례자 공급대가 0.5%
② 세금계산서 등 관련 불성실기산세 ⑦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⑧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기산세 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이면 확인분 지연제출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아니한 경우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 •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할 경우	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	1/100 1/100 1/100	2/100 2/100 2/100	
③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불성실기산세 ⑦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⑧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 등 가산세 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 ·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기재불 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 •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	1/100 1/100 5/1,000	2/100 2/100 10/1,000	단, 기재사항이 착오 로 기재된 경우 가 산세 적용 배제
④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불성실기산세 ⑦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⑧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불성실 등 가산세 ⑨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과다신고가산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기재불 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신고된 때	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	1/100 1/100 1/100	2/100 2/100 2/100	단, 기재사항이 착 오로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⑤ 신고납부불성실기산세 ⑦ 신고불성실기산세 ⑧ 납부불성실기산세	• 무신고 · 과소신고 • 무납부 · 과소납부	납부세액 납부세액	10/100 10/100	10/100 10/100 :10/100	• 간이과세자 · 과세 특례자
⑥ 영세율 신고불성실기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 미달신고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공급가액 공급가액	1/100 1/100	1/100 1/100	
⑦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①적용되는 부분에 ② · ③적용 배제 • ③적용되는 부분 ② 적용 배제 • ⑤ · ⑥의 경우 예정신고 적용분 확정신고시 적용 배제 • ⑤의 적용 중 ⑦ · ⑧동시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 같은 경우 ⑦ 적용				

$$5,000 = 8,000$$

9. 가산세

부기기차세법상 가산세의 종류는 위 표와 같다.

10. 사례연구

○ 매출세액의 계산 : 1,000 + 2,000 +

○ 매입세액의 계산 :

• 공제가능매입세액 : 200 + 1,500 + 20

$$= 1,720$$

• 공제불가능 매입세액 : 1,200 + 5 =

$$1,205$$

〈사례〉

(주) 흥길동 건축사사무소의 98년 2기 확정신고기간(98.10.1~98.12.31)동안의 매출, 매입 및 부도채권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99. 1. 25까지 신고 ·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금액은?

○ 매출현황

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비고
98. 9.30	10,000	1,000	11,000	2기예정신고누락분
98.10.15	20,000	2,000	22,000	
98.12.31	50,000	5,000	55,000	

○ 매입현황

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비고
98.07.02	2,000	200	2,200	2기예정신고누락분(소모품비)
98.10.10	15,000	1,500	16,500	외주가공비
98.11.25	12,000	1,200	13,200	소나타승용차 구입
98.12.24	50	5	55	접대비
98.12.30	200	20	220	직원전체회식비

○ 부도채권 현황

세금계산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부도일자	비고
98.04.05	12,000	1,200	13,200	98.05.30	외상채권
98.05.02	10,000	1,000	11,000	98.06.15	어음채권
98.06.30	20,000	2,000	22,000	98.07.30	어음채권

○ 대손세액공제

- 98. 6. 15 부도난 어음채권만이 대손세액공

제됨

- 부도발생일(98. 6.15)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98.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 외상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 대손세액 : 1,000

○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

세 : $10,000 \times 10/100 = 100$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

$1,000 \times 10/100 = 100$

- 가산세 합계 : $100 + 100 = 200$

○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매출세액 8,000

- 매입세액

- 매입세액 총액 2,925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205

- 대손세액공제 (+)1,000 2,720

- 납부세액 5,280

- 가산세 200

- 차감납부할세액 5,480

IV. 향후대책 및 기타 고려사항

1. 계약서 작성

설계 · 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199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98년 2월에 개정세법이 임시국

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행시기가 미정이지만 다음중 어느 하나가 시행시기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 98년 이후 대금수취분부터 적용
- 98년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 98년 2월 법 개정후 계약분부터 적용

현재로서는 98년 2월 법개정후 계약분부터 또는 98년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많으며 97년에 계약을 하고 98년에 대금수취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98년 계약예정인 것을 97년으로 소급하여 계약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98년이후 계약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서 작성시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여 건축주와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2. 면세범위 유지

비록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현재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 ①항 1호에는 국민주택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이는 국가정책상 목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줌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취지하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역뿐만아니라 설계·감리용역에도 면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의 입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고 현재 건의 중에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세대·다가구·연립 및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용역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져서 과세전환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자등록 신청

현재로서는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서 유동적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시설투자가 적고 건축주가 주로 주택 등의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 시설투자가 많거나 건축주가 주로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한다.

4. 법인전환

건축사사무소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을 폐업을 해도 건축주가 양해를 할 경우 세무상의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설계 및 감리용역의 계속성 등의 사유로 개인사업의 실체가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귀속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도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항이다. 금번의 과세전환으로 법인전환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법인전환방식은 반드시 사업의 포괄 양수·양도 방식으로 하도록 한다. 이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경우 폐업시의 잔존재고(비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법인전환일(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개인사업자의 폐업계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5. 세무행정부담의 완화

현재는 개인건축사사무소가 설계·감리비를 수취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를 당하지만 이는 주로 면세사업자에게 해당되므로 과세로 전환되면 원천징수조항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주택 등의 설계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세금계산서발행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세무행정부담의 완화라는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관련 문의처: 선진회계법인(Tel:558-4642)

공인회계사 황용현〉